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6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남근
김남희 · 김문수 · 김우영
김주영 · 김현정 · 민병덕
박상혁 · 박정현 · 백혜련
송재봉 · 이용우 · 허성무
허영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3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①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
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된 경우
2.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해당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
3.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
게된 경우
4.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
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13.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13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사항</u> 8.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①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u> <u>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된 경우</u> <u>2.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해당 상권이 급격히 위축된 경우</u> <u>3.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매출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영업을</u>

곤란하게된 경우

4.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
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
른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
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